서울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 안내

2022. 4.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1

Ⅱ. 주요 개정사항 ····· 1

Ⅲ. 세부 개정내용 ····· 3

1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 ····· 3

2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6

3 주민자치회 운영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 7

4 기타 개선사항 ····· 8

Ⅳ. 행정사항 ····· 9

<붙임>

붙임 1.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 10

붙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13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내용 안내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 반영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 표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 강화,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역량 제고, 지역 자율성 존중 등을 제도개선 방향으로 함

Ⅱ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	위원 자격 확대(§7)	• (기존)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참여 미규정 • (개정)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참여 개방
	간사자격 확대(§16)	• (기존) 주민자치회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 • (개정) **주민자치회**에서 위원 중 **간사를 호선**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 중 임명**
	분과에 일반주민 참여(§17)	•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 • (개정) 주민자치회 위원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24)	•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온라인 등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 의무 규정

구분		주 요 내 용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위원 공개 모집(§8)	• (기존) 정원의 50%는 추첨으로 우선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50%를 선정 • (개정) 위원 전원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 **(공개추첨 100%)**
	위원의 공 익 성 추구(§11)	• 관련 규정 없음 • (신설)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확보	주민총회 개최횟수 예외 규정 신설 (§20)	• (현행)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 (개정)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회의 개최 횟수 자율화 (§18)	• (현행) 정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회의를 월 1회 개최하도록 명시 • (개정)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가능**
기타 개선 사항	위원의 연임방법 명확화 (§9)	• (현행) 기존위원의 연임 시 임기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위원 위촉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 • (개정) **연임 시 3개월 전 연임신청서를 제출**
		• (현행) 기존위원의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이수 • (개정)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

Ⅲ 세부 개정내용

1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및 위상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기준 변경(제7조)

○ **(연령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 **(외국인 주민 참여)**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개방**

- 참여 가능한 외국인 주민의 범위는 외국인 주민에게 旣 부여된 권리*를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지방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소환권(주민소환법 제3조), ▲조례제·개폐청구권(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기 존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신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참 고

□ 외국인 주민 참여 관련 법령

법률상 권리	규정 내용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단체장 선거권(§1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권(§3)	
지방자치법상 조례개폐청구권(§15)	

□ 간사 자격 기준 및 임명 방법 다각화 〔제16조〕

○ **(임명권자 변경) 기존 주민자치회장 선임**에서 **주민자치회 호선 또는 임명**으로 변경

○ **(간사자격 확대)** 기존대로 **위원 중에서 간사를 호선**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위원이 아닌 **주민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

- 간사의 임명권자를 변경하여 간사의 대표성을 확충하고 간사의 자격 확대를 통해 각 동에서 겪고 있는 간사임명의 어려움 개선

□ 간사선임 방법

① 위원 중에서 호선
② 일반 주민 중에서 임명
(호선, 선임, 선발 등 구체적인 임명방법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함)

기 존	개 정 안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일반주민의 주민자치회 분과 참여(제17조)

○ **(분과원 자격확대)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도 분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의 **개방성 확충**

-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표준안, 권고 및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 반영 해당 규정 개정으로 분과구성 후 일반분과원 모집 필요

기 존	개 정 안
제17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⑤ (신 설)	제17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제24조)

○ 지자체장의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의무 신설

2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위원선정 방법 개선(제8조)

○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존 위원선정관리위원회 1/2 선정규정을 삭제**하고 **전원 공개모집 및 추첨**으로 선정

-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선정기준의 모호성 및 객관성, 투명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과정의 대표성 확충

기 존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위원의 공익추구의무 신설(제11조)

○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의 공익 실현의 목적을 명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익적 목적 강조

기 존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자치회 운영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 회의 개최횟수 자율화 · 임시회의 개최요건 변경(제15조)

○ **정기회의,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원장 회의 개최횟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월1회 또는 격월개최로 선택권 부여

※ 편의만을 고려하여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도록 유의

기 존	개 정 안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1)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 주민총회 연 1회 개최의무 예외 허용(제20조)

○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 연1회 주민총회 운영으로 인한 **업무과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 부여**

기 존	개 선 안
제20조 (주민총회)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주민총회)** 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기타 개선사항

□ 위원 연임규정 명확화 (제9조)

○ 기존 위원의 연임규정 및 연임위원의 의무교육 규정 개선

- 기존위원의 **연임 시** 공개모집 지원이 아닌 **연임신청서 제출로** 갈음하여 연임절차 개선

- 연임위원에게는 보수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하여 일괄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연임위원에게 적합한 교육 실시**

기 존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②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제12조)

○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발생한 경우 해촉규정 신설

기 존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 (기존과 같음) 3.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5, 6 (기존 제4호,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참 고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Ⅳ 행정사항

○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세칙 개정: 각 동 주민자치회

붙임1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신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②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략)	**제12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 (기존과 같음) 3.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5, 6 (기존 제4호,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⑤ (신설)	**제17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1)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주민총회)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주민총회)** ⑤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신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조성 등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시행 2022. 4. 7.]

제정) 2019.04.11 조례 제1305호
일부개정) 2022.04.07 조례 제15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2.4.7.>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정원)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구수 또는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4.7.>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7.>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7.>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2.4.7.>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4.7.>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1.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7.>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한 사람으로 해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4.7.>

② 삭제 <2022.4.7.>

③ 삭제 <2022.4.7.>

④ 삭제 <2022.4.7.>

⑤ 삭제 <2022.4.7.>

⑥ 삭제 <2022.4.7.>

⑦ 위원의 선정기준 및 추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4.7.>

⑧ 삭제 <2022.4.7.>

제8조의2(예비 후보자의 선정)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제외한 6명이하의 예비 후보자를 둔다.

② 예비 후보자는 공개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본조신설 2022.4.7.]

제8조의3(위원의 위촉 등) ① 동장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예비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된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제8조의4(결원에 따른 충원)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본조신설 2022.4.7.]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2.4.7.>

③ 삭제 <2022.4.7.>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4.7.>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7.>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두 개 동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제4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4조(자치회장 임무 등) ①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때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2.4.7.]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 ·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④ 주민자치회는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7.>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2.4.7.>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한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7.>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4.7.>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1)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7.>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4.7.>

⑥ 주민자치회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4.7.>

⑦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2.4.7.>

제19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조성 등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7.>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회계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동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535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